

9-39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2009. 6. 1. 제정

2025. 5. 13. 개정

주무부서 : 대학원교육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사운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1>

제2절 위원회

제2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교육부원장, 대학원연구부원장, 각 대학장, 각 전문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국제처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 11. 1., 2025. 5. 13.>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

④ 대학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학원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

⑤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

⑥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11. 1.>

⑦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⑧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명예학위 포함)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⑨ <삭제 2024. 11. 1.>

제3조(기타위원회) ① 대학원에 중요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학과장 및 강사 임·면

제4조(학과장) 대학원 학과장은 대학의 학과(부)장과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촉절차) 대학원 학과장은 해당 대학장이 대학원장에게 매 학기 개강 전까지 공문으로 추천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강사) 대학원 강사의 임용자격 및 절차는 본 대학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강사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9.10.23.>

제7조(제출서류) 대학원 강사의 임용 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개강 전까지 학과장이 대학원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2021.04.06.>

1. 제청서
2. 이력서
3. 학력 및 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2장 입 학

제1절 입학 및 편입학 전형

1. 입학전형

제8조(학생의 선발)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

② 입학전형은 연 2회 이상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의 시행에 관해서는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

제9조(지원 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학칙 제72조(지원 자격)에 규정된 지원 자격을 구비한 자 이어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전형과 성적우수자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21.04.06.>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별지 제4호 서식) 1통
-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
- 라. 학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 마.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 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사.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 아. 연구소(원)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 자.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 차. 포트폴리오 A4크기(작품사진 8×10인치, 10매~15매)
- 카. 각종 수상경력 관련자료(사본)
- 타. 작품전시회 Catalog 및 기타 자료
- ※위 차, 카, 타 항목은 관련학과 지원자에 한함 <개정 2017.9.11>
- 파.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 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가.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지원서 직장유무 항목에서 직업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함) 1통<신설 2010.12.1>
-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별지 제4호 서식) 1통
- 나.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수여예정증명서 1통
-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1통
- 라. 학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통
-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 바.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 사. 연구실적물(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9.11>
- 아. 추천서 2통 <개정 2017.9.11>
- 자. 직업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 차.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카.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 타.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 파. 연구소(원) 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 하.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 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나.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지원서 직장유무 항목에서 직업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함) 1통<신설 2010.12.1>

제11조(선발인원) 일반전형의 선발인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총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일반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공 구분 없이 공동평가에 의한다.

1. 서류심사

- 가. 학업 및 연구계획서
- 나.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다. 추천서
- 라.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2. 심층면접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실시하며, 다음 항목으로 평가한다.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 라. 지원학과의 학문적 연계성
- 마. 전공 지원동기와 장래 계획
- 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사. 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배점 및 평가) 일반전형 방법에서의 배점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8.>

1. 일반전형 방법

구 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계
	서류심사	심층면접	
배 점	100점	100점	200점
심사 기준	① 학업계획서 ② 대학 전 학년 성적 ③ 대학원 전 학년 성적 ④ 전공 이수도 및 전공 적합도 ⑤ 추천서 ⑥ 경력 및 연구 실적물 ※ ③, ⑤, ⑥항은 박사예 한함	① 전공학문에 대한 지식수준 ②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③ 학업역량 ④ 기타 요소	-
과 락 기 준	60점미만	60점미만	

2. 예·체능계열 전형방법

계 열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합 계
		서류심사	전공실기	심층면접	
예·체능	실기시험 실시학과	50점	100점	50점	200점
	실기시험 미 실시학과	100점	-	100점	200점

제14조(합격사정) ① 일반전형 합격사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학시험의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모집단위별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결시자(부분결시자 포함)와 과목낙제자(서류심사, 심층면접)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모집단위별 합격선상의 동점자는 전일제 지원자, 연구 실적 우수자, 전공 적합자, 출신대학(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9.18.>

제15조(신입생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2. 편입학 전형

제16조(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7조(지원 자격)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 학위과정 공히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학과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교육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6.>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1통
 - 나. 대학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다. 대학원 재학(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 1통
 - 마.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 바. 직업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 사.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 아. 여권 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 자.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 차. 연구소(원) 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카. 포트폴리오 A4크기(작품사진 8×10인치, 10매 ~ 15매)

타. 각종 수상경력 관련 자료(사본)

파. 작품 전시회 Catalog 및 기타 자료

※위 카, 타, 파 항목은 관련학과 지원자에 한함 <개정 2017.9.11>

하.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1통

나. 대학 성적증명서 1통

다.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라. 박사학위 과정 재학(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마. 학업 및 연구계획서 1통

바.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사.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아. 연구실적물 <개정 2017.9.11>

자.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차.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카.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1통

타. 기관장 취학승인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재직자에 한함)

파. 연구소(원) 추천서 1통(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로서 협력연구소(원) 비 재직자에 한함)

하. 의학과 지원자는 본교의 해당 주임교수나 학과장 추천서

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선발인원) 편입학 전형의 선발인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총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20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편입학 전형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구분 없이 공동평가에 의한다.

1. 서류심사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

다.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2. 심층면접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며, 다음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전공에 대한 지식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 라. 지원학과의 학문적 연계성
- 마. 전공 지원동기와 장래 계획
- 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사. 예·체능계 학과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배점 및 평가) 편입학전형 방법에서의 배점과 평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22조(합격사정) ① 편입학전형 합격사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학시험의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제23조(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서 입학이 확정된다.

제2절 연 구 생

제24조(연구생) 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학점 18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외국인 학생

제25조(지원 자격) 본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학칙 제72조(지원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학능력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5.3.1., 적용 2015년 하반기부터, 2017.5.1.>

제26조(외국인 학생의 범위) 본 시행세칙에 의한 외국인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3.>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7조(정원)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허가 할 수 있다.

제28조(전형시기 및 방법) ① 외국인 입학전형은 연 2회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외국인 학생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단,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전화구술심사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③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거하여 별도의 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5.1.>

제2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대학원 각 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제3장 제4절에 규정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절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30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각 과정의 재학생이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석·박사학위 과정은 4회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회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학위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다만, 학칙 제76조 3항에 의거 수업연한이 단축된 기간만큼 등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③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석·박사 학위과정자는 최소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단, 교수초빙에 따라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

④ 석사·박사학위 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는 수강 신청 학점이 3학점 이내인 경우에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칙 76조에 의거하여 등록 학기 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18.6.20.>

⑤ 정규등록 이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2회 연구등록을 필해야 하며, 본인의사에 따라 매학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1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 학기,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로 하고,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있을 경우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납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료 후 첫 학기 1차 연구등록 후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한 자에 한해 연구등록금을 1회만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1., 2016.2.3.>

⑥ (삭제) <2009.9.11>

⑦ 연구등록 시행은 2008학년도 박사학위과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또는 2008년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수료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연구등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07학년도 3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11>

제31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초 정규등록 시는 수업료를, 연구등록 시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수업료는 학기별로 납부하고, 입학금은 입학 및 재입학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③ 학기 개시 전 및 휴학 기간 내에 휴학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신설 2017.12.13.>

④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제30조 제4항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12.13.>

1. 수강학점이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⑤ 기타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 규정 I 제2장 학기 등록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13.>

제31조의 2(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 운영 규정 I 제10조(등록금의 반환)와 제11조(등록금 반환 기준)를 적용한다. <신설 2017.12.13.>

제32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개정 2014.7.10>

②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별지 제13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제 ②항에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장학금을 수혜 받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4.1.1.>

⑤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23조(휴학) 및 학사 운영 규정 I 제59조(특별휴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10.>

제33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대학원장의 허가(별지 제14호 서식)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제3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5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누적하여 3회 받은 자 <개정 2010.12.1>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 제36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학 연한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별지 제16호 서식)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 중 복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어 1년 이내(군 입대기간 제외)에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대체 인정하며 재입학금만 부과한다. <개정 2017.9.11>
- ④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⑤ <삭제 2018.8.22.>
- ⑥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신설 2018.11.8.>

제37조(전공변경) 전공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3차 학기이내로 동일학과 전공 중에서 대학원장의 허가(별지 제17호 서식)를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장학·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1절 수 업

제38조(수업)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수업연한)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각 교과목 취득성적이 95점 이상인 자 또는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76조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총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경우 최대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때, 석사과정, 박사과정 별로 구분하여 각각 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하되,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 가능 학기에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0.12.1., 2017.5.1.>

제40조(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9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은 재학연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2. 12. 1>

② 재학연한기간 중 출산한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1회당 1년의 재학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8. 1>.

제40조의2(특례재입학)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

1. 교과과정

제40조의3(세부전공) ① 각 학과에는 세부전공을 편성하되, 세부전공 당 평균 소속 전임교원의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 이상으로 세부전공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1>

② 세부전공은 학문분야 분류체계와 가능한 일치하도록 편성하되, 학과별로 모든 전공분야를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세부전공분야의 특성화를 꾀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1차 학기 말까지 세부전공배정요청서(별지 서식 제49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41조(교과목) ① 교과목은 전공과목, 학과간 공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나눈다. <개정 2014.12.1>

② 전공과목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교과목을 말한다.

③ 학과간 공통과목은 2개 학과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하여 과목코드,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요일이 같은 과목을 말한다.<개정 2014.12.1>

④ 자유선택과목은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말한다.

제42조(학점수) 교과목은 한 교과목당 3학점, 전공연구는 2학점, 프로젝트연구는 3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교과목당 학점을 달리 정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8.6.20.>

제43조(교과과정) ① 석·박사 학위과정이 있는 학과에서는 과정 간에 중복된 과목을 개설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과목 명칭을 분리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② 각 학과의 매 학기 개설과목은 석·박사 공통과목을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1>

제44조(전공과목의 편성) ① 전공과목은 공통필수과목, 세부전공별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통필수과목은 학과사정에 따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별 전공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은 단일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4과목 이내의 필수과목 군에서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③ 필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각각 6학점 이상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④ 석·박사 공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도 되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필수과목은 박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전공과목의 편성은 매 2년마다 각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편성하며 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공선택과목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학기 시작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선택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과목 편성에 대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10.12.1]

[제목개정 2010.12.1]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45조(교과과정 변경) 설정된 교과과정은 결정된 후 2년 이내는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전공연구) ① 전공연구 과목은 전공분야의 심층연구와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② 전공연구 과목은 학과내규로 분류된 전공분야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논문지도 및 연구수행의 효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수 또는 타 대학교 교수나 연구기관의 조교수급 이상 연구원과의 공동운영도 가능하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학제간 연구의 형태로 타과 교수와 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전공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교수가 전공연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제46조의2(프로젝트연구) ① 프로젝트연구 과목은 전공분야의 심층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연구프로젝트 과제수행, 연구 관련 심층 세미나 및 실험 등을 통하여 이를 행하며,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연구 과목은 학과내규로 분류된 전공분야에 따라 논문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연구수행의 효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수 또는 타 대학교 교수나 연구기관의 조교수급 이상 연구원과의 공동운영도 가능하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학제간 연구의 형태로 타과 교수와 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연구 지도교수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연구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프로젝트연구 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교수가 프로젝트연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0.]

제47조(학과간 공통과목) 학과간 공통과목은 각 학과에 따라 2과목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제48조(학기당 교과목 개설상한)** ① 각 학과가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별지 제18호 서식)의 학점 상한은 직전학기 학과별 전임교원수의 2분의 1 또는 재학생 수의 5분의 1에 3을 곱하여 적용하되, 학기당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석사 또는 박사 단일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임교원수와 재학생수에 상관없이 학기당 12학점까지는 개설을 보장하며 석·박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15학점까지 개설을 보장한다. <개정 2014.12.1>
- ② 교육의 질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학과별 매학기 개설과목 중 70% 이상을 학과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 신설 및 학문단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2018.6.20.>
- ③ 영어강의A를 1과목 이상 개설의 경우는 3학점, 3과목 이상 개설의 경우는 6학점, 학과의 세부전공을 망라하는 공통필수과목의 경우 학기당 3학점에서 6학점까지 추가 개설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0.12.1., 개정 2014.1.1., 2014.12.1.>
- ④ 공통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은 전체 개설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 개설학점이 15학점 이하의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신설 2014.12.1.>
- ⑤ 학생 수 과다로 인한 동일과목을 분반하는 경우 분반수와 관계없이 1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4.12.1.>
- ⑥ 2개 학과 이상에서 과목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 그 과목의 개설학점을 (1 / 참여 학과수)에 3을 곱하여 인정한다. <신설 2014.12.1.>
- ⑦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당 교과목 개설 상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3. 6. 28.>

제49조(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학점 상한) 타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목개정 2010.12.1]

제50조(타학과 개설과목의 전공과목학점 인정) 자유선택 과목이라도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공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1조(교과학점 담당상한) 교·강사 1인의 담당과목은 전공연구 및 프로젝트연구 과목을 제외하고 연간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담당한 교과학점은 예외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한을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11., 2018.6.20.>

제52조(수료학점) ①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0학점(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 60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60학점(다만, 자연계열은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5.12.10., 2018.6.20.>

1. 의학과 석·박사과정, 제약산업학과 석사과정, 음악·한국음악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 제

외) 등 전공연구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과는 석사학위과정은 33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0학점(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 63학점)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63학점 이상

2.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박사학위과정 30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51학점 이상(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 60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57학점 이상)

3. 약학과는 석사학위과정 27학점, 박사학위과정 30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54학점 이상(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 33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취득학점 포함 63학점 이상,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3학점 이상)

② 전공연구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4학점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8.6.20.>

1. 자연계열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공연구 6학점 취득

2.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각 전공연구 2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 2학점, 박사학위과정 4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6학점 취득)

③ <삭제 2013. 8.1>

④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또 다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 3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20.>

⑤ 프로젝트연구 학점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과 약학과의 경우 석사학위과정 3학점, 박사학위과정 6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9학점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신설 2018.6.20.>

⑥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8.>

제5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교과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 (간호학과의 전문간호사과정(노인전문, 중앙전문) 전공,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와 제약산업학과의 경우(세미나 수업 포함) 10학점까지 이수가능) 다만,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3 이상인 경우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다만, 전공연구 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하는 학과는 2회까지 가능),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인 경우 또는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12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10.12.1., 2014.5.1., 2016.6.25., 2017.5.1.>

②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하여 입학한 학생은 학과장의 지도에 따라 대학원 재학 중 하위과정에서 선수과목(보충과목)을 수강하되, 선수과목, 전공연구 및 프로젝트연구 과목을 합하여 한학기 15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8.6.20.>

③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의 이수학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기당 이수가능 상한학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1.8.>

④ 전공연구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7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8.6.20.>

1. 자연계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6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순차적으로 이수

2.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3차 학기부터 석사는 전공연구 I, 박사는 전공연구 II 를,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7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II 이수(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6차 학기부터 전공연구 I,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순차적으로 이수)

⑤ 프로젝트연구 학점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과 약학과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는 4차 학기부터 프로젝트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에서는 3차 학기부터 프로젝트연구 II, 프로젝트연구 III 을,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6차 학기부터 프로젝트연구 I, 프로젝트연구 II, 프로젝트연구 III 을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0.>

⑥ 전공연구 및 프로젝트연구 과목은 각각 학기별로 1개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 2항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전공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수료 예정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8.6.20.>

1. 자연계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전공연구 I,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수료 예정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

2.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석사학위과정은 프로젝트연구 I 과 전공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은 프로젝트연구 II, 프로젝트연구 III 과 전공연구 II 를,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프로젝트연구 I, 프로젝트연구 II, 프로젝트연구 III 과 전공연구 III 을 수료 예정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전공연구 I, 전공연구 II, 전공연구 III 을 수료 예정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

3. 약학과는 석사학위과정은 프로젝트연구 I 을, 박사학위과정은 프로젝트연구 II, 프로젝트연구 III 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프로젝트연구 I, 프로젝트연구 II, 프로젝트연구 III 을 수료 예정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

⑧ 학기당 최소 수강신청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

제54조(인정학점) 본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55조(편입학 학점인정) 석·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8학점(다만,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및 약학과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교수 초빙에 따라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 2018.6.20.>

제56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 박사학위과정의 학과에 입학한 자는 과목중복이 없는 한,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다만, 교과목이 아닌 논문지도 관련 과목은 제외)을 30학점(다만, 의·약·제약산업학과는 3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분리 운영한다. <개정 2015.12.10., 2018.6.20.>

②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해서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석사 15학점(또는 5과목), 박사 9학점(또는 3과목)을 추가이수하거나 대체인정(별지 제20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 및 특수대학원,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동종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포함)일지라도 본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과(부) 및 전공을 달리해서 입학을 하여도 선수과목 추가이수 및 대체인정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5.1.>

④ 선수과목이 석·박사 공통과목인 경우, 선수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중복이수 또는 인정받을 수 없다.

⑤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선수과목은 학부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편성하고,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편성한다. 다만, 세부전공별로 선수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수과목 개설기준은 세부전공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개정 2021.04.06.>

⑥ 선수과목 편성시 편성된 선수과목 중 1개 이상을 해당학과 전체에서 또는 세부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개정 2021.04.06.>

⑦ 기타 선수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내규에 따른다. <신설 2021.11.8.>

제57조(과정간 학점인정) ① 학부 6차 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3이상인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선 이수 학점은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①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을 3학점 이상 초과하여 이수한 대학원 이수학점의 경우에는 대학원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 8.1., 2014.5.1.>

제58조(학점 교환제) ①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교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당 1과목, 재학 중 총 2과목에 한하여 해당 학과장의 승인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 할 수 있고, 재학 중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박사 학위수여로 협정관계에 있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에서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의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제59조(교과이전)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석·박사 학위과정 각 6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을 이전할 수 있다.

제60조(이전의 인정절차) ① 교과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이전 신청서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교과이전 신청은 대학원장의 최종 인정에 따라 이를 학적부의 성적에 반영한다.

제61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30학점 이상(다만, 의·제약산업·음악·한국음악학과는 33학점)과 전공연구 2학점(다만, 의·제약산업·음악·한국음악학과는 제외)을 취득한 자에게는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국가기관 용역사업 계약에 의거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학칙 76조에 의거하여 수료인정을 위한 학기 수를 단축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5.12.10., 2017.5.1., 2018.6.20.>

1.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은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전공연구 2학점, 프로젝트연구 3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교과학점 30학점 이상, 전공연구 2학점 취득)

2. 약학과는 교과학점 27학점 이상, 프로젝트연구 3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교과학점 33학점 이상 취득)

②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30학점(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교과학점 60학점) 이상과 전공연구 4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8.6.20.>

1.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은 교과학점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프로젝트연구 6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교과학점 60학점 이상, 전공연구 4학점 취득)

2. 의학과는 전공연구 제외 교과학점 30학점 이상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교과학점 63학점 이상 취득)

3. 약학과는 교과학점 30학점, 프로젝트연구 6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교과학점 63학점 이상 취득)

③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재학생으로서 8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60학점(다만, 자연계열은 57학점) 이상과 전공연구 4학점(다만, 자연계열은 6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

정 2009.9.11., 2018.6.20.>

1.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포함)은 교과학점 51학점 이상, 전공연구 2학점, 프로젝트연구 9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교과학점 57학점 이상, 전공연구 6학점 취득)

2. 의학과는 전공연구 제외 교과학점 63학점 이상 취득

3. 약학과는 교과학점 54학점 이상, 프로젝트연구 9학점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교과학점 63학점 이상 취득)

④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료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09.9.11.>

⑤ 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신입생부터는 수료 인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8.>

제62조(수강과목제한)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서 3과목, 박사학위과정에서 3과목,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제62조의2(교원 직계가족 수강 관리) ① 수강자 중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담당 교원은 수강정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과에 ‘직계가족 수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정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해당 학과는 평가 종료 후 ‘직계가족 성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해당 과목 개설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타학과 소속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대학원장은 본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심의결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교원에 대해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9.]

제63조(수강생수) 수강생이 4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설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생이 4명 미만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4.1.1., 2014.5.1., 2018.6.20., 2019.5.14.>

1. 필수과목으로 수강생이 2명 이상인 경우

2. 의학과 교과목과 예체능계열 실기 관련 교과목의 수강생이 1명 이상인 경우(다만, 예체능계열 실기 관련 과목의 경우, 3시수 과목 수강생이 1명일 경우 1시수, 수강생이 2명일 경우 2시수로 담당 교원의 시수를 인정함) <개정 2019.5.14.>

3. 기타 학과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만, 수강생 수에 따라 3시수 교과목 수강생이 1명일 경우 1시수, 2~3명일 경우 2시수 인정) <개정 2019.5.14., 2020.1.3.>

제64조(보충수강) 논문 지도교수는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 제출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논문지도상 특정과목의 보충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6학점 범위 내에서 5차 및 6차 학기에 그 보충과목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4조의2(원격수업)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수업 교과목 또는 혼합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수자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 검토 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신청받은 원격수업 교과목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대학원장은 원격수업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원격수업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③ 동영상 강의(비동시적 원격수업)는 학습 동영상 콘텐츠, 학습정리, 토론, 팀 프로젝트, 질의응답 등의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동영상 콘텐츠는 1학점 당 최소 25분 이상으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실시간 온라인 강의(동시적 원격수업)는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1학점 당 학습시간이 최소 50분 이상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⑤ 매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품질 관리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내규」에 따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교수자에게 수업 개선을 위한 교수법 교육 참여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 전문 개정 2022.09.22.]

제65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①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등 급	취 득 점 수	평 점	1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
A ⁺	95점 이상	4.5	100
A	90 ~ 94	4.0	94.28
B ⁺	85 ~ 89	3.5	88.57
B	80 ~ 84	3.0	82.85
C ⁺	75 ~ 79	2.5	77.14
C	70 ~ 74	2.0	71.42
P	PASS	없음	없음
F	0 ~ 69	-	-

② A⁺ 등급의 부여는 과목별 수강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공연구 및 프로젝트연구, 수강인원 3명 이하인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전면개정 2010.12.1., 개정 2018.6.20.]

제65조의2(국제화선도학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강의A 교과목을 2년간 10개 이상 개설하는 학과를 국제화선도학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 개정 2014.1.1.]

제66조(국내외 연수 학점인정) ① 재학 중 국내외 연수를 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

의 1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4.>

② 국내연수는 5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15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단기 해외연수는 30시간 당 1학점으로 인정하며 90시간 이상 이수 시에는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1.5.4.>

④ 장기 해외연수는 대학원장이 사전 승인한 해외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 15주 이상 연구 목적으로 연수할 경우 제1항의 기준 이내에서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4.>

⑤ 국내외 연수 학점인정의 시행과 학점인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5.4.>

제2절 장학금·포상 및 징계

제67조의1(대학원장학금) 대학원 장학금의 지급에 대하여서는 9-8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하며 제3장 일반대학원 장학금에 따른다. (신설 2012.2.1.)

제67조의2(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67조의3(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각종 제 증명서를 위조, 조작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방조한 자
4.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6. 절도, 폭력, 폭언, 성희롱, 성폭력을 행하거나 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개정 2019.10.23.>
7. 학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 시험 부정행위자
9.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관련 자
10. 기타 학칙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 해당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대학원장이 직접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인권침해”(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력 등) 사건인 경우에는 징계 발의 전에 외부 수사기관 및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개정 2021.8.26.>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진술서 1부(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③ 제2항에 따라 발의된 사건의 징계 의결 전에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대학원상벌소위원회(이하 “상벌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8.26.>

④ 상벌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1.8.26.>

⑤ 상벌소위원회에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1.8.26.>

⑥ 징계 발의 또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권센터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가해 학생의 휴학 및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3.>

⑦ 기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

제67조의4(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제67조의3 제①항 8호에 해당하는 시험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 또는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

2.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

3.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4.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6. 책 또는 노트를 훑쳐본 자

7.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 또는 남의 답안지를 훑쳐본 자 및 보여준 자

8.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9. 기타 부정행위

②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징계내용은 중간, 수시, 기말시험 및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등 모든 시험에 적용한다.

④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장이 징계하고 대학원장에게 통고한다. 다만, 근신 이상의 징계는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정도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67조의5(연구부정행위) ①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는 연구과제, 연구발표, 수업과제물 등 모든 유형의 연구에 적용된다.

② 기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진실성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3절 대학원 중앙 우수논문 시상

제68조(중앙 우수논문제) 대학원의 내실 있는 학문풍토를 이루며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정·시상하는 중앙 우수논문제를 시행한다.

제69조(심사대상) ① 재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공동으로 연구된 논문의 경우 모든 공동연구자가 반드시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이어야 한다.

③ 우수논문 시상 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학위논문으로 제출되었던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0조(심사부문) 우수논문은 재학생의 전공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인문·사회 부문과 이·공학 부문으로 양분하여 심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제71조(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총학생회를 통해 대학원장에게 매년 5월에는 참가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매년 10월에는 완성된 학술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 연구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5.14., 2021.05.17.>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전공학문분야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소속 학과가 모두 달라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

제73조(심사절차)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요청된 각 논문의 연구계획서 심사, 구두발표가 포함된 본 논문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대학원장에게 최종결과를 보고한다.

③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 요청된 논문 중에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각 3편, 가작 각 5편을 선정한다.

제7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5조(인준) 대학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인준한다.

제4절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제76조(종류) 학칙 제84조에서 정한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2. 종합시험

제77조(시기)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은 연 2회, 매 학기 초 1개월 내에 실시한다.

제78조(응시자격)

① 외국어 시험의 응시는 1차 학기부터 가능하며, 종합시험의 응시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2차 학기 이상 수료 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4차학기 이상 수료 후, 해당 시험과목을 이수 완료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예·체능계열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외국어 시험중 영어시험의 응시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교양영어 과목을 이수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학칙 제 2013. 8.1>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②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차 학기에 1과목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는 5차 학기에 1과목 이상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79조(응시절차) 외국어 및 종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외국어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81조(외국어시험 과목) ①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추가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 분야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박사과정의 경우 학과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을 부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② <학칙 제 2014. 12. 1.>

③ 외국인 학생 중 모국어가 영어권 유학생인 경우 영어시험은 면제한다. <신설 2012. 12. 1>

제8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83조(종합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은 4

과목으로 하며, 응시과목의 결정은 학과내규로 따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모두 2과목은 반드시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택해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한 필수과목은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대상 필수과목이 될 수 없다.

②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종합시험과목의 대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0.12.1]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제84조(시험위원) ① 외국어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 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공통필수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은 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동위원회에서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고 공동채점하여야 한다. 시험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은 학과내규로 한다.

[전면개정 2010.12.1]

제85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의 성적은 계열별 상위 70% 내외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최종 합격을 정한다. <개정 2015.9.18.>

② 한국어능력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15.9.18.>

③ 종합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15.9.18.>

④ 영어시험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별도의 영어강좌를 수강하여 합격하거나, TOEIC 780점, TOEFL 530점(CBT 233점, IBT 91점), New TEPS 363점 (TEPS 664점), IELTS 6급, G-TELP (Level2) 75점,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OPIc IM3 이상 (다만,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취득하여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19.10.23.>

⑤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체하려면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35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 대체인정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⑥ 종합시험에 불합격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0.12.1]

[제84조 제4항,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⑤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영어강좌의 수강자격은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자에 한한다. <신설 2014.12.1, 적용 2015학년도 전반기부터>

제86조(시험방법)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학 위 수 여

제1절 학위수여

제87조(학위수여) ① 명예박사 학위를 제외한 각 학위는 제52조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제76조 내지 제 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학위별 각종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다만,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학과의 경우, 협정을 체결한 국외 대학원에서 본교 복수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석사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협정관계에 있는 국외 대학원의 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학과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24.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과·전공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을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실적심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9.4.>

제88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학칙 제8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제①항과 같다.

1. 석 사 학 위

제89조(학위수여요건)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제90조에서 정한 자격을 지닌 자에게 수여한다.

제90조(논문제출 자격) ①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석사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4.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신설 2010.12.1>

5.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0.12.1., 개정 2021.04.06.>

[제90조 제5호,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6.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통해 학위논문의 유사도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6.2.3.>

② 제87조제2항의 실적으로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4.9.4.>

제91조(논문제출 절차)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별지 제28호 서식).....1부
2. 석사학위 논문 심사완료 인준지 및 학위논문 등록 확인서.....각1부
3.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각1부
4. 연구실적인정서(별지 제29호 서식).....1부

제92조(논문작성 언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논문의 분량과 제책) 별도의 제책기준에 따른다.

2. 박 사 학 위

제94조(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제95조에서 정한 자격을 지닌 자에게 수여한다.

제95조(논문제출 자격)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박사학위논문’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3. 국내외 전문학술지(인문사회계열·예술계열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자연·공학·의학계열의 경우 JCR)에 단독, 주저자 1편의 논문을 게재 혹은 게재확정을 받은 자(다만, 교수업적평가제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계열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4.12.1>
4. 각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신설 2010.12.1>
5.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시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6.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한 자 <신설 2010.12.1>
7.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0.12.1., 개정 2021.04.06.>

[제95조 제7호, 적용 2011학년도 전반기 입학자부터]

8.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통해 학위논문의 유사도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신설 2016.2.3.>

제96조(논문제출 절차)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1. 학위논문제출승인서(별지 제28호 서식).....1부
2. 박사학위 논문 심사완료 인준지 및 학위논문 등록 확인서.....각1부
3. 연구실적 인정서(별지 제29호 서식).....1부
4. 석사학위증명서 및 석·박사과정 성적증명서.....각1부

제97조(준용기준)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박사학위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절 논문프로포절 심사 <신설 2010.12.1>

1. 석 사 학 위 <신설 2010.12.1>

제97조의 2(심사방법) ①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학과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학과장은 본 논문심사 이전에 논문심사계획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2. 박 사 학 위 <신설 2010.12.1>

제97조의 3(심사위원회) ①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 교수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5. 1>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2.1]

제97조의4(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각 학과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고, 심사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이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있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별지 제31호 서식)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논문 프로포절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

제97조의5(평가방법) 논문 프로포절 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본조신설 2010.12.1]

제97조의6(재심사)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

제3절 논문심사

1. 석사학위

제98조(심사위원회) 석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자격은 제128조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5. 13.>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1>

④ 외부 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2.1>

[제99조 제4항, 적용 2011.9.1부터]

제10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99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101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본 심사

가.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고, 심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1>

제102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03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104조(심사의 연기) 예비심사결과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연기 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5조(심사결과 보고)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종합심사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논문최종작성)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심사완료 인준지 제출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13.>

제106조의2(실적 심사) ① 제87조제2항의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의 인정 기준은 학문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실적 또는 추가 학기 이수 등 학과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석사학위논문을 실적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석사학위논문을 실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연한 이내 최종 학기의 논문제출승인서 제출일까지 지도교수와 학과장 승인을 받아 실적심사 요청
2. 학과의 내규에 따라 3인 이상의 학과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실적 심사

[본조신설 2024.9.4.]

2. 박사 학 위

제107조(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8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자격은 제128조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5. 1, 2025. 5. 13.>

③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⑤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1., 2014.12.1>

⑥ 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2.1>

[제108조 제6항, 적용 2011.9.1부터]

제109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제108조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110조(심사방법) 논문심사는 2회 이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논문심사일 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본 심사(1,2차 심사)

가.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 모형, 기타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논문 프로포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논문 합격여부를 판정(별지 제33호 서식)한다.

다.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 1차 심사는 반드시 각 학과별로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당해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개정 2010.12.1.> [적용 2011.9.1부터]

제111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 심사 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12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113조(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4조(심사의 연기) 본 논문 1차 심사 결과 논문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 심사를 보류하고 학과장 명의로 심사연기요청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제115조(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논문최종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 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117조(수여의결 보고)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의 수여를 결정하 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③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118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명예박사 학위

제119조(목적)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현저한 공적을 나 타낸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120조(학위수여 의결)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21조(학위종별)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86조 제①항에 의거 하여 학위수여자의 공헌 또는 공적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22조(학위등록)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명예박사 학위 등록 대장에 등재한다.

제123조(학위기 수여) 명예박사 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124조(수여일자) 명예박사 학위는 개교기념일과 졸업식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원위원회가 다른 의결을 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25조(수여학위의 취소)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취소한다.

제5장 학 위 논 문

제126조(논문지도교수배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학생은 해당 학과장의 승인 하에 1차 또는 2차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배정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1. (삭제) <2010.12.1>
2. 학과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의 교수가 공동지도할 수 있다.
3.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학과 교수 1인과 협력연구소(원)위원 1인으로 하여 공동 배정한다.
4. 지도교수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과 논문지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지도교수별로 석·박사학위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1>

제127조(지도교수 변경) ①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별지 제36호 서식)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한 후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후에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학과 학과장 또는 현 지도교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①항의 변경원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논문지도교수 변경 탄원서를(변경할 지도교수를 경유) 대학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3. 9. 1>

제128조(지도교수 자격) ①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으로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6.1., 시행 2014.9.1., 개정 2018.11.8.>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교원임용 규정 제2조 4항에 정의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28조 1항에서 정한 해당학과 교수 1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내국인 별정제교원은 석사과정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도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0.12.1., 2014. 12.1., 2018.11.8., 2019.10.23., 2020.1.3.>

③ 지도교수는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교원으로 배정한다. <신설 2014.12.1>

- ④ 인문사회계열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주저자로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신설 2014.12.1>
- ⑤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SCI급 학술지에 주저 1편 이상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신설 2014.12.1>
- ⑥ 예술계열 박사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2편 이상 (주저 1편 이상) 게재한 교수에 한한다. <신설 2014.12.1>

제129조(논문지도 및 심사) 박사학위 논문지도 교수는 한 학기에 논문 2편을 초과하여 지도 및 심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29조의2(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비)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논문지도비: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논문작성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에게 지급하는 대가
2. 논문심사비: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논문(제87조제2항의 대체 실적 포함)을 심의하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대가

[본조신설 2024. 12. 31.]

제130조 삭제 <2025. 5. 13.>

제131조(학위논문등록)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인준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의 전자 파일을 학술정보원에 온라인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

② 학위논문 등록 이후 학위청구자의 개명으로 인해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학술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제132조(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학위논문 작성 및 제책기준 참조)

제6장 학과간 협동과정

제133조(설치학과 및 전공) 학과간 협동과정의 설치학과와 전공은 학칙에 의한다.

제134조(운영위원회) 본 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위과정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5조(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참여 학과의 학과장이 된다.

제136조(위원회위원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7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본 과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3. 본 과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학·연·산 협동과정

제139조(설치학과 및 전공)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학과 및 전공은 학칙에 의한다.

제140조(운영위원회) 본 과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단위과정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141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출강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3. 본 과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 대학교의 관련 학과장 중에서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와 각 연구원(소)의 선임 또는 책임 연구원 중에서 각 연구원(소)장이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하며, 각 분과별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43조(위원회 위원임기) ① 본 대학교 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각 연구원(소)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여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5조(재정)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양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재정운영은 운영위원장 책임 하에 한다.

제8장 대학원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146조(자격)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선발시험에 합격하고 의무복무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37조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 2017.9.11>

제147조(임용절차) 임용은 본인의 지원과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제148조(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은 박사과정 수료 후 첫 학기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1>

제149조(임용시기) 임용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제150조(복무 및 혜택) ① 전문요원의 소속은 대학원으로 하고 해당 학과장의 감독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

② 해당 학과장은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 과제를 부여하며, 연구요원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임용기간 만료 15일 전에 연구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당 학과장은 출근부를 비치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박사과정 수료 후 첫 학기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전문연구기관 3년간의 의무복무를 병역필로 처리한다. <개정 2017.9.11>

제151조(자격상실) 전문연구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에는 복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전문연구요원 임용을 취소하고, 총장은 이를 병무청에 즉시 통보한다.

제152조(보수) 전문연구요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53조(기타) 대학원 전문요원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제154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모집단위는 석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학과로 한다. 다만, 학과의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로 한다.

제155조(지원 자격 및 신청)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3.>

1. 학부 재적생으로 지원시점에 다음 재학할 학기가 7차 학기(학사학위과정 5년제는 9차 학기)인자
2. 다음의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소속대학 졸업학점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지원 자격
132	106
140	116
160	140

3.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평균평점이 3.3 이상인 자
4.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1개 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는 지원할 수 없다.

제156조(제출서류)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 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2021.04.06.>

1. 입학원서 1부
2. 학업계획서 1부
3. 성적증명서(국문) 1부
4.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추천서 1부
5. 서약서 1부

제157조(전형방법)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학과(전공)별 필요 시 기타 전형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② <삭제 2020.1.3.>

③ <삭제 2020.1.3.>

제158조(수업연한)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학사학위과정 5년제는 6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한 자는 중도포기자로 간주한다.

<개정 2020.1.3.>

1. 학사학위과정 3.5년(5년제는 4.5년)<개정 2020.1.3.>
2. 석사학위과정 1.5년

제159조(수강신청)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부에서 수강신청한 대학원 선이수 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석사학위 과정 졸업이수 학점으로도 인정한다.

제160조(학부졸업)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부 졸업이수학점은 다음과 같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통과 등 학부 졸업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소속대학 졸업학점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선발자 졸업학점
132	124
140	134
160	154

- ② 학부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학과의 조교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161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2. 10.>

③ 대학원 입학 이전에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학사 운영 규정 I」 제66조(졸업자격요건) 및 제67조(졸업학점)에 따라 학부 졸업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군휴학, 질병휴학 제외)을 할 수 없으며,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중 자퇴하거나 제적될 시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의 합계가 학부 소속대학의 졸업학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60조에 의한 학부 졸업을 취소한다.<개정 2020.1.3.>

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수료학점 미취득자는 학점등록을 불허하며, 4차 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2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학·석사학위 연계과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지원서교부 및 접수,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 통보, 학적 변동 관리 <개정 2017.9.11>
2. <삭제 2017.9.11>
3. 학 과 : 지원자 전형

제10장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제163조(용어의 정의)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② 중도진입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형(이하 “중도진입형 전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석사과정 2학기 이수 및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동일학과 동일전공에 한하여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③ 신입생선발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형(이하 “신입생선발형 전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 신입생 선발과 동일한 절차로 모집 지원을 받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신설 2012.8.1.)

제164조(설치대상) 각 학과는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2020.3.18.>

제165조(지원 자격 및 선발시기)

① 중도진입형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입학 한 자로서 2학기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2차 학기말에 지원할 수 있다.
2.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3. 선발 시기는 매학기 2월과 8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국가과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국한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8.19.>

② 신입생 선발형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입학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
2. <삭제 2017.9.11>
3. 선발 시기는 전·후반기 입학전형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시행한다.
4. 201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실시<신설 2012.8.1.>

제166조(제출서류) 제10조(구비서류) 일반전형 석사학위과정 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도진입형 지원자는 석사과정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개정 2012.8.1.>

제167조(선발원칙 및 절차) ①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1.6.>

② 학생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통합과정 설치학과에서 내규로 정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68조(수업연한)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76조 제③항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69조(이수학점)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4학점(교과 60학점 및 전공연구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계열과 학과는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9.9.11., 2018.6.20.>

1. 자연계열은 63학점(교과과목 57학점 이상, 전공연구 6학점) 이상 취득
2.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은 62학점(교과학점 51학점, 전공연구 2학점, 프로젝트연구 9학점) 이상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교과과목 57학점 이상, 전공연구 6학점 취득)
3. 의학과는 전공연구 제외 교과과목 63학점 이상 취득
4. 약학과는 63학점(교과학점 54학점, 프로젝트연구 9학점) 이상 취득(다만,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전공연구 제외 교과과목 63학점 이상 취득)

제170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다만,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은 프로젝트연구 제외 24학점, 약학과는 프로젝트연구 제외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20.>

② 제①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관련 제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발급한다.

제171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통합과정에 있는 자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86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6.20.>

② 제1항에 의거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시행세칙의 석사학위과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6.20.>

③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172조(학사관리) ① 통합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의 이수,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 등 제반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을 적용한다.

제11장 3개 대학원(중앙, 숭실, 인하) Consortium

[제11장 전제 삭제 2014.12.1.]

제173조(취지) <삭제 2014.12.1>

제174조(학점교환) <삭제 2014.12.1>

제175조(수강신청) <삭제 2014.12.1>

제176조(학생의 권리 및 의무) <삭제 2014.12.1>

제177조(기타) <삭제 2014.12.1>

제12장 보 칙

제178조(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9.6.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시행세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대학원 학사내규」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본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종전의 조항을 갈음하여 본 규정 또는 본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9.1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시행세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대학원 학사내규」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본 시행세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면 종전의 조항을 갈음하여 본 시행세칙 또는 본 시행세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예외) 제39조 2항, 제52조 1항 내지 2항, 제53조 1항 및 3항 내지 4항, 제61조 3항 내지 4항, 제176조 중 석·박사학위 통합과정과 관련된 규정과 제69조와 제102조 중 3호는 2010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되고, 2009학년도 후반기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0.3.24)

본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제107조 제6항, 제100조, 제109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예외) 제44조,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제77조, 제82조, 제84조 제4항, 제89조 제5호,

제94조제7호는 2011년 전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 2010년 후반기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2.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조항 제66조 ~73조는 생략하며 대학원 장학금의 지급에 대하여서는 제66조1항에 따른다. 이후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 번호를 변경한다.

부 칙 (2012.8.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5.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8.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6.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1항은 2014년 7월 10일, 제128조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는 2015년 하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9.18.)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4조는 2016년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2.10.)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3.)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 중 제53조(학기당 이수학점)에서 제약산업학과의 경우 2015학년도 전반기부터,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의 경우 2015학년도 하반기 입학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6.12.13.)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5조는 2017학년도 하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5.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39조, 제53조, 제56조, 제61조는 2017학년도 하반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9.11.)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13.)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6.20.)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와 제63조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48조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8.22.)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8.)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14.)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개정 시행세칙 중 제63조(수강생수)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8.19.)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3.)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3.)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8.)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4.06.>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0조(논문제출 자격), 제95조(논문제출 자격)을 적용함에 있어 2021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이 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6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5.4.>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8.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2조(수료학점) 제53조(학기당 이수학점), 제61조(수료인정 및 시기)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1.6.>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선발원칙 및 절차)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전반기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9.22.>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6. 28.>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9. 4.>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1. 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대학원위원회) 개정 사항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4. 12. 31.>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5. 13.>

본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